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6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 3

2.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정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13

Ⅰ.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6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현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본공제에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공제되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대기업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됨.

기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지원되며,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 추징됨.

또한, 정규직전환자와 육아휴직복귀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

아야 하며, 전환일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2년 2조 9,574억원, 2023년 3조 5,903억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4조 20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29,574	35,903	38,112	40,208

주 1)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청년정규직 등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 상향 (윤준병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2025. 12. 31.</td>
<td>□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650</td><td>1,750</td><td>1,000</td><td>600</td></tr>
</table>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td></tr>
</table>

*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 개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200만원 상향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 정규직 등의 채용을 촉진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2023년 12월 기준 청년고용률(46.0%)[1], 장애인 고용률(36.1%)[2], 60세 이상 고용률(42.9%)은 전체인구 고용률(69.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약 134만명이며, 15~54세 기혼여성 중 17%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15~54세 기혼여성	미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규모	7,943	2,837	1,349
15~54세 기혼여성 규모 대비 비율	100.0	35.7	17.0

자료 :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이와 같이 우대공제대상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의 상향은 기업에 우대공제 대상의 채용에 대한 유인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액공제액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2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청년정규직 등 상시근로

1) 해당 조사에서 청년은 15~29세 기준임.

2) 2023년 5월 기준임.('2023 장애인 통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한차례 이미 상향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1,1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방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둘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청년 등 채용 지원 사업 현황]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도 예산안에 10만명 지원분 편성, 7,772억 편성(전년 대비 1,195억원 증액)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5년도 예산안에 75.6만명 지원분 편성, 3,774억원 편성(전년 대비 540억원 증액)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2025년도 예산안에 357억원 편성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장려금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80만원) - 2025년도 예산안에 기업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다. 지원방식 유지 및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박정하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이연희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
<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2025. 12. 31.</td><td>□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30. 12. 31.(박정하의원안, 이연희의원안)
○ 시행일
- 2025. 1. 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26. 1. 1.(박정하의원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td></tr>
</table>

현 행	개정안
	연희의원안)

* 박정하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02),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김정호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66), 이연희의원안 2024. 10. 29. 발의(의안번호 5001)

□ 4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지원방식을 유지하면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김정호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안·이연희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하게 고용증가인원당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평가되었음.[3] 특히, 중소기업에서 비교적 뚜렷한 고용증대효과가 관찰되었음.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 9.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1.4조원, 2033년 1.3조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20.2조원(연평균 2.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3년]

(단위: 조원)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1.4	-2.8	-4.0	-4.0	-4.1	-2.7	-1.3	-20.2	-2.9

자료: 예산정책처

둘째,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동 특례의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위해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2025년에 심층평가를 거쳐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정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 행	정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신 설>	□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4 신설)	□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4 신설)
	○ 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	○ (좌 동)
	○ 공제액: 출산장려금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공제액: 출산장려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	○ (좌 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좌 동)

* 정일영의원안 2024. 6. 12. 발의(의안번호 363),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 2건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자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세액공제율과 관련하여 정일영의원안은 4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윤준병의원안은 50%로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4]이 1명 미만인 국가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4)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함.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국가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이스라엘	3.00	슬로베니아	1.64	오스트리아	1.48
체코	1.83	슬로바키아	1.63	핀란드	1.46
멕시코	1.82	네덜란드	1.62	캐나다	1.43
아이슬란드	1.82	에스토니아	1.61	그리스	1.43
프랑스	1.80	벨기에	1.60	룩셈부르크	1.38
덴마크	1.72	헝가리	1.59	리투아니아	1.36
아일랜드	1.72	독일	1.58	포르투갈	1.35
콜롬비아	1.72	라트비아	1.57	폴란드	1.33
튀르키예	1.70	노르웨이	1.55	일본	1.30
호주	1.70	칠레	1.54	이탈리아	1.25
스웨덴	1.67	코스타리카	1.53	스페인	1.19
미국	1.66	영국	1.53	**대한민국**	**0.81**
뉴질랜드	1.64	스위스	1.51	('23년p)	(0.72)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					

자료 :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3만명(잠정)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19,200명 감소(△7.7%)하였음.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는 등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조출생률[5]은 4.5명으로 전년대비 △0.4명 감소했음.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천 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출생아 수	326.8	302.7	272.3	260.6	249.2	230.0
전년대비 증감률	△30.9	△24.1	△30.3	△11.8	△11.4	△19.2
조출생률	6.4	5.9	5.3	5.1	4.9	4.5
합계출산율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5) 조출생률은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함.

이에 최근 여러 기업들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2024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금산입 범위에 출산·양육 지원금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음.[6)]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주요사례]

회사명	지원내용
유한양행	- '23.8.1.부터 임직원이 자녀 1명 출산할 때마다 1,000만원 지급 ('23.1.1.~7.31.까지 출생한 아기가 있는 임직원은 500만원)
동아	- '23.1.1.부터 임직원이 자녀 1명 출산할 때마다 1,000만원 지급
한국콜마	- 출산축하금 지급('21.8~,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
태웅로직스	- 출산축하금 지급('24년 출산 자녀부터 자녀 첫돌 때 50만원, 두 돌부터 첫째 50, 둘째 1,000, 셋째 이상은 2,000만원)
부영	- '21.1월 이후 출산직원 자녀에게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지급 ('24.2월, 총 70억원 지급)
금호 석유화학	- 출산축하금 지급('24년 상향) (첫째 500, 둘째 1,000, 셋째 2,000, 넷째 3,000만원)
HD현대	- 여성 임직원 임신·출산 축하금 지급(임신 500만원, 출산 500만원) '23.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연 600만원, 3년간 최대 1,80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의2.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수 있음.

2024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25~49세 남녀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난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9%로 나타나는 등 자녀양육 비용 부담이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건이 더해졌을 때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조건	전체	남성	여성
근무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85.2	83.3	87.6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88.3	87.6	89.1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난다면	81.9	87.1	75.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83.2	81.5	85.2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81.1	78.4	84.5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68.1	66.1	70.7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77.4	75.3	79.9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76.4	77.9	74.5

자료 :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출산장려금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들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출산의향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세액공제 도입으로 대기업 위주로 출산장려금 지급이 활

성화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실질적 소득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평균소득의 격차(305만원)가 2021년(297만원)에 비해 증가하는 등 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장려금 지급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여 실질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a-b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자료 :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매출 규모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작은 중소기업, 즉 대다수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출산장려금은 업무 관련 경비로 인정되어 기업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이미 지원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